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레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우리어머니 Cu.	7월 12일(일) 11:40	강당
사도들의 모후 Cu.	7월 12일(일) 11:40	식당
울뜨레야	7월 19일(일) 11:40	강당

알림

- 7월 15일(수) 11시 강당에서 경로당 월례미사 있습니다.
- 7월 17일(금)은 법정공휴일인 제헌절로 사무실 쉽니다.

다음 주일(7/19) 청소 담당 : 19구역

꾸르실료 참가신청 안내

- 청년 제55차 꾸르실료(8월20일 ~ 8월23일)
- 접수마감 : 7월19일까지(사무실접수)
- 참가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후보기준
 - 중추적인 사람:인품과 자제력,책임감있는 사람
 - 봉사적인 사람:복음의 누룩이 될 수 있는 사람
 - 세례를 받은 지 3년이상 되고 견진을 받은 사람

유가족과 함께 바치는 위령기도(연도)

- 일시 : 7월 31일(금) 저녁 7시 40분
- 장소 : 보스코홀
- 대상 : 7월달 기일이신분
- 접수 : 본당사무실

교무금 책정 및 봉헌안내

- 봉헌해주시는 교무금은 본당 사목과 교구 운영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교회의 유지와 선교사업 등을 위해 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2026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하신 분들은 책정 및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 책정율 : 65.31%, 납부율 : 63.16%

수지계산서

2026.06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359,366,110	선교비	188,647,063
후원금	7,693,820	성무활동비	52,511,200
목적헌금	15,935,100	교육비	3,210,000
기부금	1,108,873	자선찬조비	6,720,000
부속기관수입	8,400,000	행사비	77,459,400
기타수입	6,334,408	인건비	95,139,329
운영수지차액	201,576,280	운영비	55,782,780
		세금과공과	6,204,419
		복리후생비	7,114,110
		기 타	107,626,290
합 계	600,414,591	합 계	600,414,591

우리들의 정성(7월 1일 ~ 7월 7일)

교무금	6,920,000원
주일헌금	현금 5,254,000원 신자애프 22,000원
2차헌금	2,856,000원
감사헌금	구상호10만원 김수정20만원 김민석10만원 이윤길10만원 강요순 5만원 오미란10만원 여성지 5만원 최선영 5만원 이서정 2만원 이서연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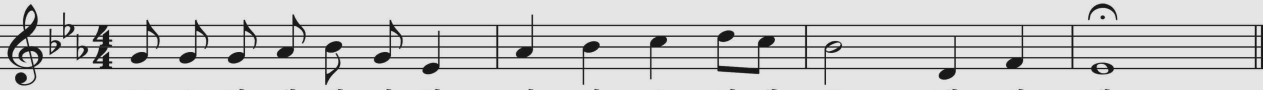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7/12	구민서	임종윤 정재호	이치헌 정연희
7/19	박혜선	김영균 임종윤	김덕영 정재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7/12	박용환	김영균	조홍환 도현만
7/19	옥윤필	김용진	최웅조 박용환

성가번호 ♪ 입당 : 337 ♪ 예물준비 : 340, 342 ♪ 영성체 : 175, 174 ♪ 파견 : 437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3 편 사 목

제 3 장 특수사목

제 3 절 교포사목

제 194 조 (교포사목자)

1항 교포사목자가 활동하는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1-15항 참조).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 활동 지역의 관할 장상에게 임시적으로 속한다.
2. 교포사목자는 활동 지역 교회의 사제단과의 일치를 적극 도모하며, 그들의 생활과 직무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2항 교포사목자가 본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되어 임시적으로 그곳 교구에 속하지만, 파견기간이 끝나면 본교구로 돌아와야 한다.
2. 교포사목자는 본교구장 주교 및 사제단과의 연대성, 일치성을 언제나 보존하여야 한다.

제 195 조 (교포사목에 관한 기타 규정)

교포사목에 관한 그 외의 규정은 “이민사목에 관한 훈령”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8항 참조).

제 4 절 그 밖의 특수사목

제 196 조 (사목자들의 임무)

사목자들은 교회의 통상적인 사목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분야, 예를 들면 관광객, 외국인, 항해자와 선원가족, 교도소의 수인, 입원환자, 이향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제 197 조 (담당사제와 위원회)

한국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위와 같은 특수분야의 사목을 담당할 사제를 선임하고 필요한 기구나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